



명쾌한 수다

경영능력이 의심되는 대표이사에게 직원들이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경우, 이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들이 2015년 11월 23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사임제안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체불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전부 면제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사임제안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관한 신고 및 채권으로 인한 법적분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쟁점 및 법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사임제안서’

전달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사임제안서를 제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상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경영실패에 따라 임금체불,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임제안서’를 마련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자별적 집단적으로 마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사임제안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함으로써, 오직 피해자의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강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실현 확보가 아닌 다른

사적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사임제안서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한 조치들은 정당한 권리행사, 예정된 절차, 단순 경고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4.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주도권을 보유한 피해자는 ‘사임제안서’의 수용이나 거부는 물론 수정 제안 등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합심하여 자신을 압박하는 취지의 제안·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임제안서’의 전달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들 및 주요 투자자들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이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